

## | 지면보수교육 | 모성보호②

# 교대(야간)근무와 모성보호

이복임 전문위원 /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교대제란 작업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교대제가 주로 시행되는 분야는 의료, 방송, 통신 등 국민생활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 분야, 석유정제나 화학공업, 금속제련 등 공정상 조업중단이 어려운 산업 분야 등이고,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함으로써 시설투자비용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기업에서도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사업체의 약 41%가 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한국노동연구원, 2000) 핀란드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25%(Harma, 1998), 미국은 전체 노동력의 20%가 교대작업(Monk, 1994)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작업 근로자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러한 생활리듬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게 된다.

대사속도 등의 생리적 기능, 단기기억력 등의 정신적 기능 및 가정생활 등의 사회적 기능 등은 24시간을 주기로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는 일교차를 가지게 되는데, 교대작업자는 이 일교차의 혼란에서 오는 생리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강제적으로 적응해야만 한다.

교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정적 기능변

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교대(야간)작업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임신한 여성의 경우,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가 없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교대작업자의 건강문제는 다양한 사례와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다. 교대작업자는 비교대작업자에 비해 소화기질환 발현율, 심혈관질환 발현율, 신경 또는 심인성 신체증상 호소율, 흡연율, 음주율, 안정제복용률 등이 높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서의 교대(야간)작업은 자연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궁내 태아의 성장을 저연(저체중아)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교대작업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첫째, 상시적, 고정적, 비순환적 야간교대작

업은 피해야 한다.

둘째,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2~4일의 밤연속근무 후에는 2일 정도의 휴일을 가져야 한다.

셋째, 아침근무 후에 같은 날 저녁근무하는 등의 빠른 교대는 피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가 자유로운 주말계획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4~7일의 휴가 뒤 여러 날의 작업은 피해야 한다. 10~14일 일하고 4~7일을 연속적으로 쉰다거나 하면 고령근로자는 휴가 후 근무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진다.

여섯째, 긴 교대주기를 두고 임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곱째, 근무시간이 길면 가벼운 일을 배치하고, 이를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덟째,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정할 때는 근로자의 통근시간, 자녀양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아홉째, 교대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 근로자가 예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열째,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